

입찰조건

2020.12.

1. 공사명 : 아주대학교 성호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

2. 공사개요

가. 공사기간 : 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(2021.02월내 준공)
(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)

나. 공사범위

- 1) 1층 : 105, 134, 133, 133-1호 / 성호관 강당
- 2) 기존 냉난방기기 및 부속설비 철거(냉매배관, 드레인배관 포함)
- 3) 신규 시스템에어컨(EHP) 설치 (실내기 11대, 실외기 5대)
- 4) 점검구 공사 (벽체 및 천정, 장비 당 1개소 설치)
- 5) 냉매순환계통 진공 건조 작업
- 6)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, 보온작업
- 7) 밸런싱 체크
- 8) 기타 부대공사

3. 공사내용

가. 일반사항

1) 제작 및 설치 승인

- 가)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규격서에 의거 설계, 제작,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, 제작, 설치하여야 한다.
- 나)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,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,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.

2) 제품사양 및 설치일반

제품 사양	세부사양
제조사	LG EHP
모델명	R-W0720A2S 외 (장비일람표 참조)
자격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• EHP 설치 전문 기술 인증점 등록업체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본점의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인 업체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제품 하자시 100% 무상교환• 냉매 계통 진공 및 냉매보충 후 시운전•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교체작업 완료(작업완료 증빙자료 제출-전, 중, 후 사진첨부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어컨의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시 - 교체 제품의 기능이 현저하게 미달한 때 - 교체 작업 일시가 현저히 지연될 시 - 기타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•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.
--	--

3) 사용자재 및 기기

- 가) 본 장비의 정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현장에 반입 전 감독자에게 견본 및 순정부품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,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자의 확인 입회하에 시공한다. 이때 불합격품은 자체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나) EHP 장비 설치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해당 제작사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4) 배관자재

- 가) 배관용 부속자재는 "KS"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받은 업체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합의하에 국내최고의 부품을 사용한다.

5) 설치 시행자 유의사항

- 가) 설치 시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 공정표에 의거된 기간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각 작업은 협의 후 시공하며 작업시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완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한다.
- 나) 코아 작업 및 설치에 관련된 일체 행위에 따른 전기, 통신, 방송, 인터넷 전선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발견 시 발주처 담당에게 연락을 취한다.
- 다) 설치 검수시, 설치된 물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, 계약자는 즉시 무상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

6) 시험 및 검사

- 가)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나)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.
- 다)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-10°C , 멀티 한랭지형은 -15°C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, 성능, 소비전력, 소비전류, 운전주파수, 성적계수(COP)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.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, 소비전력,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.
- 라)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.

7) 시공

- 가) 모든 제품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, 설계도서에

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.

- 나) 모든 공사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세부작업 일정 및 소음, 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고,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.
- 다) 공사기간은 발주일로부터 2021년 2월 28일 이내로 한다.
(※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)

8) 공사 현장관리

- 가) 현장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해당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나)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현장 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.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시공한다.
- 다) 감독원이 지시하는 안전, 환경, 위생, 화재예방, 정리정돈, 공해방지 등의 현장관리상 보완해야 할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.
- 라) 작업완료 후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쓰레기를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한다.
- 마) 공사기간에 나오는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나. 냉난방기 설치공사

1) 일반 설치 사양

-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.

2) 실내기 설치

- 흡입구,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냉난방 공간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.
- 실내기의 토출방향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.
- 실내기는 사무실 중앙(4방향 천장형의 경우)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무실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어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.
-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.
-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.
- 기기의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, 온도 감지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.
- 단열 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등에 의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.
-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.

- 보수 및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.
-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.
-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,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.
- 천장 매립형 실내기 설치 시 실내기와 천장 사이에 2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, 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기존 설치되어있는 시설물 등 (감지기, 조명등, 녹화용카메라)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.

3) 실외기 설치

- 실외기는 옥상이나,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.
-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.
-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.
- 실외기는 각종 기초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.
-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.
-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 길이(Y분지관만 적용시 200m, 헤더 적용시 150m) 및 최대 고저차(100m)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
-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.

4) 냉매 배관

-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여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.
- 단열 tape를 사용하여 보온재를 마감한 배관을 taping을 시행하되 단열층이 압축되지 않도록 적당한 인장으로 시공하고 행거 지지부분은 별도의 외부 보강재를 시공하여 냉매관을 보호한다.
- 냉매관을 행거 지지시 실내기와 실외기간의 전원선 및 통신선도 같이 케이블 타이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고정시킨다.
-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m,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m 이내로 설치한다.
-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어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.
- **냉매 배관은 1.2 ~ 1.5 m 간격으로 지지되어야 한다.**
- 분기관 설치 및 용접시에는 배관 직경만큼 삽입 용접, 엘보 사용 시에는 분기관까지 500mm이상, 분기후에 500mm 이후 벤딩하며 반드시 용접 시 질소를 치환 시켜 배관내에 산화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최종 용접 후에는 질소 후려싱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.
-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, 38.7 kg/cm²G (3.8 MPa)의 내압에 견뎌야한다.
-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.
-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 거리는 220m 이내이어야 하며, 배관 총합 길이 총합은 1000m 이내이어야 한다.
- 배관길이, 엘보 등을 포함하여 실외기로부터 가장 먼 실내기까지의 배관 길이가 90m를 초과할 경우 실외기에서 첫 분기관까지의 크기를 한 단계 높여 설치한다.

5) 실외 노출배관

- 실내, 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.
- 배관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배관의 손상을 방지한다.
- 배관을 COVER시공할 때에는 향후 서비스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.
- 후렉시블 사용은 트레이 내부에서 실내기까지 Ø16 cd관을 사용하고 트레이에서 실외기까지는 Ø100의 방수 자바라를 사용하며 실외기에는 컨넥터를 사용하며 전선관을 마감하여 시공한다.

6) 드레인 배관

-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,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여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.
-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 처리한다.
- 각 사무실 드레인은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여 배관 노출이 최대한 없도록 한다.
- 배수관(드레인관)은 1/50~1/100이상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, 전산 행거를 이용하여 1~1.5m 간격으로 고정한다.
-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.
-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.

7) 시운전

-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 사양 및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.
-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.
-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.
- 냉방, 난방 시운전을 실시하고 실외기 및 실내기의 운전 상태를 확인 한다.
-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동작상태를 반드시 확인 한다.
-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 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, 개별로 운전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PC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, 개별로 운전 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메인 전원 회로의 절연을 확인하여 전원 단자와 접지사이에 직류 500V를 인가했을 때 20MΩ 이상의 절연이 되는지 확인한다.

8) 기타사항

- 성호관 강당 에어컨 설치공사 관련

구 분	내 용	비 고
기설치 부위	- 공조실 내부 공조기 장비 및 S/A,R/A 메인덕트	설계도면 참조
공사발주 요청부위	- 메인덕트~A/C실내기 덕트 분기 및 연결 - A/C 전,후면 에어챔버 - 디퓨저 및 후렉시블 덕트	설계도면 참조

- 실내기 및 실외기 전원공사, 자동제어 공사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실시한다.
(실내기~실외기 사이 통신선은 내역에 포함한다.)
- 옥외 실외기 설치 시 거치용 콘크리트 패드를 견고히 설치한다.
- 도면상의 실내기 및 실외기, 기타배관의 위치는 반드시 준수할 것,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 시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한다.
- 신설되는 실외기는 강의실, 행정실 등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,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.
- 실내 배관 설치공사 작업 시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벽체 마감재 타공 후 점검구를 설치하고 마감처리 한다.
- 벽체 및 바닥 타공시 배관 관통부 틈새는 밀실하게 마감처리 한다.
-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하며 만일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, 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 계약자 책임 하에 배상 또는 해결하여야 한다.
- 계약자는 계약수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기본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본 공사의 성호관 강당 실내기 및 배관공사 진행시 층고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주변 고정물에 결속하여 작업을 실시한다.
- 본 건물은 강의실, 행정실 등이 배정되어 있음. 따라서 학사일정에 따라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의 경우 공사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.
- 노출된 공간에서의 탈의를 금해야 하고, 단정치 못한 행위로 인해 구성원(교수, 직원, 학생)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.
- 착공 전에 세부 공정표 및 공사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진행해야 함.
- 현장 주위는 매일 깨끗이 청소하여 학업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.
- 교내 시설물 손상 시,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.

4. 지급자재

- 가.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는 학교에서 지급 (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시설비는 업체 부담)
- 나. 상기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포함 견적할 것

5. 견적조건

- 가. 입찰공고기간 내 입찰접수완료 업체에 한하여 공내역 및 설계도면 제공
(제공되는 공내역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 할 것)
- 나. 제공되는 도면을 기준으로 물량 및 내역을 산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입찰 할 것
(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1일전 사전 연락하여, 1회 방문 가능)
- 다. 물량 산출 및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은 없으며, 산출오류에 따른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.
- 라. 현장정리 및 보양, 폐기물 처리, 준공청소까지 견적 포함
- 마.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, 퇴직공제부금은 내역에 포함하며, 추후정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
- 바. 공사 및 정산완료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, 학교 감사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으로 판정될 경우, 환수 조치

- 사.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, 2019년 개정된 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’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(증액)계약이 가능함. 단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,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.
- 아. 공사 시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학교에서 규정한 주차료 납부 포함
(주차료: 2,000원/4시간, 3,000원/당일, 30,000원/월 으로 계상)

6. 입찰참가자격(기계)

-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- 나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
- 다. 입찰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
- 라.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지역인 업체
- 마. 2020년도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 (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제출)
- 바. LG전자 물품공급계약서 제출 가능업체
- 사.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대학(교) 또는 (준)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중 1개소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냉난방설비 관련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(실적증명서 제출)

※ 첨부자료

1. 간접비 정산 확인서

확인서

- 업체명 :
- 이름 :
- 부서 및 직책 :
- 사무실 연락처 :
- 핸드폰 번호 :

"아주대학교 성호관 냉난방설비 개선공사" 진행완료 후 4대보험, 안전관리비,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.

명기된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"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", "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", "발주처 내부기준"을 적용하여 정산한다.

기존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미만으로 집행될 경우 미지급하며,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하지 않는다.

예외로 안전관리비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, 2019년 개정된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(증액)계약이 가능하다. 단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부합해야 하고,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.

1. 고용보험/산재보험

- 증빙서류 :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(공사명, 공사금액, 공사기간 기재)

2. 안전관리비

- 적용기준 : 노동부고시 "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"

- 증빙서류

1) 인건비성 : 지급명세서 사본, 신분증 사본, 노임대장, 업무일지(날짜별 업무내용/시간), 날짜별 사진

2) 안전·보건관리자 : 안전·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며,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한 경우만 인정

3) 물품구매 : 세금계산서 사본, 무통장입금증 사본, 영수증 사본, 반입사진, 설치사진, 설치위치 등

-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: 현장배경 물품 반입 사진, 근로자 실착용사진(지급 물량 = 근로자 사진), 지급대장(대상자 서명포함) 등

- 안전시설비: 설치 위치 표기 도면, 수량산출, 반입사진, 설치사진 등

- 인정불가

- 노동부 고시 "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"의 【별표2.안전관리비의 항 복별 사용 불가내역】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

- 안전시설 및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절대 인정불가
- 신호수 : 유도·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, 현장 외부에서 차량통제를 위한 신호수
- 안전시설 : 현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훈스 및 분진망 등

3. 환경보전비

- 적용기준 : 국토교통부고시 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”
- 증빙서류
 - 인건비성 : 지급명세서 사본, 신분증 사본, 노임대장, 업무일지(날짜별 업무내용/시간), 날짜별 사진
 - 물품구매 : 세금계산서 사본, 무통장입금증 사본, 영수증 사본
- 인정불가
 - 현장청소 인건비,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
 - 단순 청소용품 : 마대, 마스크/장갑, 청소도구(빗자루, 쓰레받이, 집게, 삽 등)
 - EGI 펜스(추락방지용)
 - 부직포(일반용)
 - 환경관리 전담인력 인건비
 - 폐기물 처리비(별도내역으로 지급)

2020.

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<p>1. 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(제7조제1항제1 호 관련)</p>	<p>가. 안전·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</p> <p>1) 안전·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(<u>영 별표3 제46호</u> 에 따라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)</p> <p>2)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3)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</p> <p>※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·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(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·신고한 경우,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·신고한 경우,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·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나.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</p> <p>1) 시공, 민원, 교통,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</p> <p>가)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</p> <p>나)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<u>유도·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</u></p> <p>다)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, 민원 및 환 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</p> <p>※ 도로 확·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 는 신호자, 공사현장 진·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 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</p> <p>다. 안전·보건보조원의 인건비</p> <p>1) 전담 안전·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</p> <p>2) 보조원이 안전·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</p> <p>3) 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·보건과 무관하 거나 <u>사무보조원(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)</u>의 인건비</p>
<p>2. 안전 시설비 등 (제7조제1항제2</p>	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, 장치, 자 재, 안내·주의·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·시설이 안전장 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· 수리 및 설치·해체 비용 등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호관련)	<p>가.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, 장치, 도구, 자재 등</p> <p>1) 외부인 출입금지,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</p> <p>2) 각종 비계, 작업발판, 가설계단·통로, 사다리 등</p> <p>※ 안전발판, 안전통로,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</p> <p>- 다만, 비계·통로·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, 사다리 전도방지장치, 툴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·사다리,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</p> <p>3)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</p> <p>4) 작업장 간 상호 연락,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 되는 통신시설·설비</p> <p>5)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, 공사 진척상황 확인,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</p> <p>※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</p> <p>나. 소음·환경관련 민원예방,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, 표지]</p> <p>1)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, 분진망 등 먼지·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</p> <p>2) 도로 확·포장공사, 관로공사,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, 안내·주의·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</p> <p>※ 공사안내·경고 표지판, 차량유도등·점멸등, 라바콘, 현장경계휀스, PE 드럼 등</p> <p>다. 기계·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</p> <p>※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.</p> <p>1)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</p> <p>※ 텁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텁날접촉예방장치,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</p> <p>2)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</p> <p>라.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(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)</p>
3.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(제7조제1항제3	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, 복리·후생적 근무여건 개선·향상, 사기 진작,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·수리·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호 관련)	<p>무용 기기</p> <p>나.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, 장구, 용품 등</p> <p>1) 작업복, 방한복, <u>방한장갑</u>, 면장갑, 코팅장갑 등</p> <p>※ 다만,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, 쿨토시, <u>아이스조끼</u>, 핫팩,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</p> <p>2)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</p>
4.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(제7조제1항제4 호 관련)	<p>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,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, 안전점검 및 검사,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·정기·구조변경·수시·확인검사 등</p> <p>나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</p> <p>다. 「환경법」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</p> <p>라.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</p> <p>마. 매설물 탐지, 계측, 지하수 개발, 지질조사,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</p> <p>바.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</p> <p>사. 안전순찰차량(자전거, 오토바이를 포함한다) 구입·임차 비용</p> <p>※ 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·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, 수리비,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</p>
5. 안전보건교 육비 및 행 사비 등 (제7조제1항제5 호 관련)	<p>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,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가.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·해체·운영비용</p> <p>※ 다만, 교육장소 부족,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</p> <p>나.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</p> <p>다.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, 회사기, 전화기,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</p> <p>라.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(품)</p> <p>1)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</p> <p>2)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</p> <p>3)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</p> <p>4)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</p>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	<p>자,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</p> <p>마.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1) 신문 구독 비용</p> <p>※ 다만,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, 기술적 정보를 60%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</p> <p>2)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</p> <p>3)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</p> <p>바.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, 안전기원제 행사비</p> <p>1)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</p> <p>2)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(기도비용 등을 말한다)</p> <p>3)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</p> <p>4)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</p> <p>사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</p>
6.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(제7조제1항제6호 관련)	<p>근무여건 개선, 복리·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가.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·기구·약품 등</p> <p>1) 간식·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, 탈의실, 이동식 화장실, 세면·샤워시설</p> <p>※ 분진·유해물질사용·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, 세면·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</p> <p>2)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, 정수기·제빙기, 자외선차단용품(로션, 토시 등을 말한다)</p> <p>※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,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, <u>6~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</u></p> <p>3) 혹서·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·보약 구입 비용</p> <p>※ 작업 중 혹한·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·해체·유지비용은 사용 가능</p> <p>4)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</p> <p>5) 병·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, 암 검사비,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</p> <p>※ 다만, 해열제,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</p>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	<p>나. 파상풍,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(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한다)</p> <p>다.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 · 해체 · 유지비, 기숙사 방역 및 소독 · 방충비용</p> <p>라.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</p>
7.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	-
8. 본사 사용비 (제7조제1항제6호 관련)	<p>가.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</p> <p>나.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</p>